

정정신고(보고)

2020년 7월 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16일

3. 정정사유 :

-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2020. 4. 1 시행)

4. 정정사항

| 항 목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| (신설) | <p>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|
| 부 칙 | (신설) | 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|